

# 평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증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

214

제출년월일 : 2001. 5. 24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## □ 제안이유

- 행락객들에 의한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 행위로 인해 청정환경이 날로 훼손되고 오염되어감에 따라 “강원도에 와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과중한 처벌을 받는다” 는 인식이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1환경시책으로 쓰레기 불법투기행위에 대한 강원도의 과태료 인상 계획에 따라 평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5의 과태료 부과 기준 일부 조항을 상향조정하고자 함.

## □ 주요골자

1. 폐기물의 수집장소·설비·또는 허가·승인 받은 매립시설 외의 곳에 생활쓰레기를 버리거나 매립한자(법 제7조 제1항 또는 제2항)
  - 가. 별도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(담배꽂초, 휴지통)을 버리는 행위 : 5만원에서 10만원
  - 나. 간이보관기구(비닐봉지, 천보자기등) 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자 : 10만원이상 20만원이하에서 20만원
  - 다.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쓰레기를 수거치 아니하는 경우 : 10만원이상 20만원이하에서 30만원
  - 라. 차량, 손수레 등 별도의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: 20만원이상 50만원이하에서 50만원

## □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해당없음
- 예산조치 : 필요없음
- 관계부처승인 : 강원도 환경67500-497(2001.3.23)
- 입법예고 : 필요없음
- 신구조문대비표 : 해당없음

## 평창군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평창군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별표5중 1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| 부 과 대 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부 과 금 액(만원) |       |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차 위반       | 2차 위반 | 3차 위반 |
| 1. 폐기물의 수집장소,설비또는허가,승인 받은 매립시설외의 곳에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자(법제7조제1항또는 제2항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|       |
| 가. 별도기구없이 휴대하고있는폐기물 (담배꽂초,휴지등)을 버리는행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          | 10    | 10    |
| 나. 간이보관기구(비닐봉지,천보자기등)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          | 20    | 20    |
| 다. 휴식또는 행락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0          | 30    | 30    |
| 라. 차량,손수레등 별도의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0          | 50    | 50    |
| 마.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(건축폐재류등)을 버리는행위(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,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,동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활용 신고자가 사업장폐기물을버리는행위는 제외한다) | 50          | 50    | 50    |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우 200-700 강원도 춘천시 봉의동 15번지 / 전화 (033) 249 - 2573 (FAX) 249 - 4035  
 환경정책과 / 과장 이명섭 / 생활환경담당 박주택 / 담당자 김시형(ksh0075@prdv.in.kangwon.kr)

|      |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|             |     |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|-------------|-----|-------|
| 문서번호 | 환경 67500-497   | 선   | 과장    | 김시형         | 과   | 환경정책과 |
| 시행일자 | 2001.03.23 (5) | 점   | 일자    | 2001. 3. 27 | 시   |       |
| 공개여부 | 공개             | 수   | 시간    |             | 결   |       |
| 수신   | 수신처 참조         |     | 번호    | 2431        | 재   |       |
| 참조   | 환경과장           | 처리과 | 완성복지과 |             | 공   |       |
|      |                | 담당자 |       |             | 람   | 김시형   |
|      |                | 심사자 |       |             | 심사일 |      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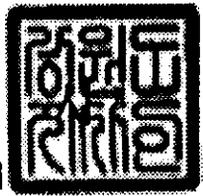
**제 목 쓰레기 불법투기행위에 대한 과태료 인상 조속 추진**

1. 환경 67500~1901(2000.11.20)호와 관련입니다.
2. 행락객들에 의한 무분별한 쓰레기 불법투기행위로 인해 청정환경이 날로 훼손되고 오염되어감에 따라 “강원도에 와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과중한 처벌을 받는다”는 인식이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1 환경시책으로 쓰레기 불법투기행위에 대한 과태료 인상계획을 시달한 한 바 있으나, 일부 시·군에서는 관련조례 개정 등 시책추진이 다소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.
3. 따라서 각 시·군에서는 금년 피서철부터는 쓰레기 불법투기행위자에 대하여 인상된 과태료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2001. 5월까지 반드시 폐기물관리조례 개정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인상기준 1부. 끝.

강 원 도 지

전결 환경복지국장 김낙기



수신처 : 더(01-07), 더(08-18)

##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인상기준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연 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조 정 (안)   | 비 고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|
| • 별도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(담배꽂초, 휴지등)을 버리는 행위 | 일반 지역<br>최저 25,000<br>최고 50,000     | 100,000   |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특별 지역<br>최저 30,000<br>최고 100,000    | 200,000   |     |
| • 간이보관기구(비닐봉지, 천보자기등)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자  | 일반 지역<br>최저 50,000<br>최고 200,000    | 200,000   |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특별 지역<br>최저 100,000<br>최고 300,000   | 400,000   |     |
| •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 쓰레기를 수거치 아니 하는 경우        | 일반 지역<br>최저 100,000<br>최고 200,000   | 300,000   |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특별 지역<br>최저 100,000<br>최고 400,000   | 600,000   |     |
| • 차량·손수레등 별도의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   | 일반 지역<br>최저 200,000<br>최고 750,000   | 500,000   |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특별 지역<br>최저 200,000<br>최고 1,000,000 | 1,000,000 |     |